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37호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9.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임용시험	직렬(직류) 및 직급		선발예정인원	구분			비고
				일반	장애인	저소득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경기 남부	400	352	40	8	-
		경기 북부	160	140	16	4	-
		소계	560	492	56	12	-
	사서 9급		9	9	-	-	자격증 소지자
	전산 9급		20	20	-	-	자격증 소지자
	공업(일반기계) 9급		23	23	-	-	-
	공업(일반전기) 9급		21	21	-	-	-
	보건 9급		11	11	-	-	-
	식품위생 9급		7	7	-	-	-
	시설(일반토목) 9급		15	15	-	-	-
	시설(건축) 9급		50	50	-	-	
	기록연구(기록관리) 연구사		7	7	-	-	관련 학과 학사 이상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업(일반기계) 9급		6	6	-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공업(일반전기) 9급		5	5	-	-	
	시설(일반토목) 9급		4	4			
	시설(건축) 9급		13	13	-	-	
합 계			751	683	56	12	

※ 교육행정 직렬은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구분 모집(「거주지제한」 참조)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

구분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5과목)	기록연구사(7과목)	(3과목)
시험시간	100분 (10:00~11:40)	140분 (10:00~12:20)	60분 (10:00~11:00)

나. 제3차 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 배점 비율 : 각 과목당 100점 만점

라. 합격자 결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3. 시험 과목

시험구분	직렬	직류	시험과목		비고
			1차	2차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교육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사서	사서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중 2과목(선택)	
	전산	전산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공업	일반기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	일반전기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보건	보건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	식품위생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시설	일반토목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	건축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기록연구	기록관리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업	일반기계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공업	일반전기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	일반토목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시설	건축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

※ **교육행정과 사서 직렬**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4. 응시 자격

가.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구분	계급	응시 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18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연구사	20세 이상	1998. 12. 31. 이전 출생자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18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 단,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한하여 2001년 1~2월생으로 현 고교 3학년 재학생 응시 가능

다. 성별 : 제한 없음

라. 학력·자격증 등 제한

○ **사서·전산·기록연구 직렬**

- **최종(면접)시험일**까지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을 충족**해야 함

구분	직렬	직류	학력 · 자격증 등 제한	
공개경쟁임용시험	사서	사서	1급 · 2급 정사서, 준사서	
	전산	전산	기 술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기록연구	기록관리	아래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단, 2011.5.23. 이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경우에 한하며, 2011.5.23. 이전부터 이수중인 경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경력경쟁임용시험**

-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의 선발 예정 직렬 해당(관련) 학과 졸업자** 및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당해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하며,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구분	직렬	직류	해당(관련) 학과
경력경쟁임용시험	공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공업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시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시설	건축	건축(건축설비)

※ 4년제 대학,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의 재학·휴학자 제외

※ 2018.1.1. 현재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는 고졸자에 포함

※ **'[붙임 1]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계획'**을 반드시 확인할 것

마. 거주지 제한**[2018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주소지가 경기도내 거주]**

○ **교육행정 직렬**

-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거주지를 제한하여 구분 모집(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구분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근무예정지역	비고
경기 남부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경기 남부	**※ 구분 모집 기준일** **- 2018. 1. 1. 현재 기준** **※ 전보 제한** - 신규임용 후 3년간 다른 관할지역으로의 전보 및 타 임용기관으로의 전출 제한
경기 북부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경기 북부	

※ 거주지제한 적용 예시

☞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의정부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는 응시자의 경우**

- 경기 북부로 응시하여야 하며, 경기 남부로는 응시가 불가함
- 신규임용 후 경기 북부 지역에서 근무하며, 경기 남부 지역으로의 전보가 3년간 제한됨

☞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경기도내(수원시) 거주자가 최종(면접)시험일 전에 경기도내에서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시·군(의정부시)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 2018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역(경기 남부)으로만 응시 가능

☞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경기도내(수원시) 거주자가 최종(면접)시험일 전에 서울 또는 인천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 최종합격자 결정 시 불합격 처리

☞ **2018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지 않으나, 그 이전에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경우**

- 응시 불가

○ **사서, 전산, 공업(일반기계, 일반전기), 보건, 식품위생, 시설(일반토목, 건축), 기록연구 직렬**

-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

바.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붙임 2] 장애인 응시자 편의 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는 장애인 구분 선발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구분 선발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단, 중복접수는 불가)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해야 함

사. 저소득층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 선발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구분 선발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단, 중복접수는 불가)
- 저소득층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 보호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

5. 시험 일정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제1·2차시험 (필기시험)	2018. 5. 9.(수)	**2018. 5. 19.(토)**	2018. 6. 15.(금)
제3차시험 (면접시험)	2018. 6. 15.(금)	**2018. 7. 14.(토)**	2018. 8. 3.(금)

※ 시험장소와 1·2차 시험(필기시험) 및 3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에 공고하며, 합격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않음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결과조회]에서 불합격자만 확인 가능

6. 필기시험 문제 출제

구분	출제기관	출제과목	공개 여부	문제책 회수
위탁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국어(한문포함), 물리	공개	미회수
공동출제	17개 시·도교육청	위탁출제하지 않는 과목	비공개	회수

※ 위탁출제과목 문제는 필기시험 당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개

※ **공동출제 과목 문제책은 공개하지 않으므로 절대로 가져갈 수 없음**
(가져가거나 절취 또는 훼손, 필사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3. 26.(월) 9:00 ~ 3. 30.(금) 18:00까지**

나. 취소기간 : **2018. 3. 31.(토) 9:00 ~ 4. 2.(월) 18:00까지**

※ 원서접수 및 취소 상담시간 : 기간 내 9:00 ~ 18:00 (☎ 031-240-6555)

다. 접수 방법

- 경기도교육청 온라인 채용 서비스(http://edurecruit.goe.go.kr) → 온라인 채용 → 지방공무원채용에 접속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접수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라. 응시수수료 : 기록연구사 7,000원 / 9급 5,000원(결제방법에 따라 소정의 처리비용 소요)

- 납부 방법 :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의 전자결제, 휴대폰결제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함(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 환불)**

마.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규격 : 가로 3.5㎝×세로 4.5㎝, 파일크기 100kb 이하, JPG 또는 GIF 파일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 사진으로써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 될 수 있음**

바.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표는 '온라인 채용 서비스(http://edurecruit.goe.go.kr)'에서 **2018. 5. 9.(수) 10:00부터 면접시험일까지 출력 가능**

-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고, 필기시험일(5.19.) 반드시 지참**

-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접수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 불가함**(단, 가산대상 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전일까지 가능)**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 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수수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응시수수료는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PC 운영체제 윈도우 7~10과 익스플로러 버전 7.0~11.0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

8.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비율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함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필기시험 시행일 전까지 지정·취득에 한함]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기록연구직렬 제외**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각 시험단계별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모집구분별·모집단위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은 모집구분별·모집단위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단,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

- 공통 적용 가산점**(※ 전산 직렬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 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무분야	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 분야	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연구사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2012. 1. 1. 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 3급 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직렬(직류)별 적용 가산점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렬(직류) 직급	자격증			가산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교육행정 9급			변호사	5%
공업 (일반전기) 9급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5%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3%
식품위생 9급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5%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3%
시설 (건축) 9급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5%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3%

직렬(직류) 직급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보건 9급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5%
	기 능 사 :	식품가공		3%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5% ~ 3%
시설 (일반토목) 9급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5%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3%

직렬(직류) 직급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공업 (일반기계) 9급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5%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 가산대상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온라인 채용 서비스(http://edurecruit.goe.go.kr)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함(**OMR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 위의 "가(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나(자격증소지자)"항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사람은 위의 "가(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나(자격증소지자)"항의 가산점수를 가산하지 않음
- 허위로 가산점을 등록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라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자격증 가산점 합산 방법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 [공통 적용 가산점 1개] + [직렬(직류)별 적용 가산점 1개]**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또는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자는 시험 당일 **9시 20분까지 응시표** 및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장애인등록증)**과 답안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답안지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전화기, 스마트폰, 스마트시계, 무선호출기, 이어폰, MP3, PDA 등),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함

※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음(아날로그 시계 가능)

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5년간 정지함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바. 시험문제책의 과목 순서는 시험 공고문상의 과목순서를 따르고 있음

사.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처리되고,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거나 총점의 60% 미만 득점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어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차. 교육행정 직렬의 경우 경기 남부, 경기 북부로 구분 모집함에 따라 신규임용 후 다른 관할지역 전보 및 다른 임용기관으로의 전출은 3년간 제한됨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다른 임용기관으로의 전출은 4년간 제한됨

11. 기타 사항

가.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붙임 1]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계획**'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라며, 학교장 추천에 대한 사항은 졸업한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람

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붙임 2] 장애인 응시자 편의 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사본)와 함께 제출

다. 본 공고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를 통해서 확인 가능

라. 본 시행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시행 7일전까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에 공고함

마. 업무 관련 문의처

- 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및 장애인 편의지원 등)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1-249-0348)으로 문의
- 응시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문의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031-240-6555)으로 문의